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ina: Guidance clarifying country-by-country reporting, information exchange](#)

국가별보고서 및 정보 교환에 대한 명확한 지침: 중국 국가별보고서

2016 년 중국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자 신고 및 동기화보고서 문서 관리에 관한 지침(42호 문건)을 발표했으며 최근에 CbCR 보고서 정보교환 관련 특정 조항이 2016 년도 CbCR 보고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 지침은 42호 공고로 알려져 있으며, 2017년도 지침은 46호 공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관련 조항은 42호 공고문의 7조와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2호 공고문 제 7조 "세무당국은 중국과 상대국가 간의 조약, 합의 또는 약정에 따라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실시 할 수 있다."

42호 공고문 제8조 " 기업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가별보고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다국적지배기업이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준비하였으며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한다면 세무당국은 특별세무조사 진행 시 기업에게 국가별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국적기업이 다른 나라에게 국가별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음.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0 January 2018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2. 중국과 국가별보고서 정보교환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음.

3.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이 맺어져 있으나 실제로 국가별 보고서가 교환되지는 않음.”

중국의 국세청 국제조세국은 46호 문건에 포함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다국적기업의 최종지배회사는 42호 문건의 국가별보고서 제출 규정(전년도 그룹의 연결기준 매출액이 5억5천만 CNY(약 900억원)를 초과한 경우) 을 만족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46호 문건의 내용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2016년도 국가별보고서에 대한 정보교환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외투기업은 기업이 속해있는 다국적기업이 해당 국가의 기준에 맞춰 국가별보고서를 준비했을 경우, 46호 공고에 따라 중국세무당국의 특별 세무조사 시 국가별보고서를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투기업이 42호 규정에 따라 동기화보고서 작성 대상인 경우 특별 세무조사 시 동기화보고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자동 정보교환협정인 MCAA 에 서명하였으나, 2016년 기준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MCAA 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2016년도 CbCR 보고서를 다른 나라들과 교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Conference Agreement for H.R. 1 – Initial Observations

미국 세제개편

미국의 세제개혁안은 지난 11 월 2 일 미 하원을 통과하였고 12 월 15 일 상하양원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였으며, 12 월 20 일 상·하원 의결에 최종 통과, 12 월 22 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며 세법개정에 필요로 하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 시절인 1986 년의 세제개편 이래 31 년 만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수 경제 활성화, 조세회피 방지, 해외투자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혁은 2018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며, 21%의 법인세율 포함 대부분의 법인세 관련조항은 영구조항인 반면 개인관련 조항은 상당부분 2025 년까지 적용 후 기존 조항으로 회귀되는 일시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법인세, 송환세,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세원잠식방지 최저한세(Base Erosion Minimum Tax) 등의 개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 국제거래 관련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현행법과 개정법의 비교:

현행 법	개정 법
법인세율 -최고세율 35%	-2018 년부터 21% 단일세율로 변경
연구개발비용(R&D Expense) 공제 -당기비용공제 또는 5년/10년에 걸쳐 상각 선택	-연구개발비용을 자본화한 후 5년 에 걸쳐 상각
감가상각비용 공제 -가속상각과 20년 이하의 내용연수 자산의 경우 취득년도에 50%보너스 감가상각 가능	-2017. 9. 27 부터 2023. 1. 1 사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 허용 -2023년 이후 연도부터 보너스 감가상각율이 순차적으로 감소
접대비 공제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50% 공제 -직원내부 관리를 위한 식대 100% 공제	-항응성 접대비 100% 불공제 -업무관련 식대 50% 불공제 -직원내부 관리를 위한 식대 50% 불공제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Corporate AMT 20%	-최저한세 폐지
동종자산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고정자산을 동종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가능	-동종자산교환으로 인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부동산으로 한정.
이자비용 공제	-기업의 순이자비용 공제액을 EBIT 의 30%로 제한

<p>결손금 공제</p> <p>-2년 소급, 20년 이월공제 가능</p>	<p>- 무기한 이월공제 가능하며 소득의 80%에 한해 사용가능</p> <p>- 소급공제 불가능</p>
<p>급여비용 공제</p> <p>-상장기업의 임원등에 대한 급여는 \$1M 한도로 공제(성과금은 제외)</p>	<p>-급여한도 대상 임원의 범위 확대</p> <p>-성과기준급여에 대한 예외조항 폐지</p>
<p>세액 및 소득공제(Tax Credit & Deduction)</p> <p>연구개발 세액공제(R&D Credits)</p> <p>국내제조활동공제(Section 199 Deduction)등 다양</p> <p>고용세액공제 (특정집단이나 퇴직 군인 등을 채용 시 주어지는 세액공제)</p> <p>에너지 투자 세액공제</p>	<p>-연구개발세액공제(R&D Credits)유지</p> <p>-국내제조소득공제 폐지</p> <p>-저소득주택세액공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유지</p> <p>-고용세액공제 유지</p> <p>-에너지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유지.</p>
<p>해외관계사거래 추가 과세: 세원잠식방지세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p>	<p>-과세표준(taxable income)에 부과된 21% 법인세액과 조정과세표준에 부과된 10%(2018년 5%, 2025년 이후 12.5%) 중 더 큰 세액을 과세.</p> <p>-조정과세표준에는 관계사 지불금액을 공제하지 않음. 관계사지불금액에는 이자, 로열티, 자산구매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하나 재고자산의 원가, 일부 서비스비용 분배 등은 예외로 인정됨.</p> <p>(관계사는 직간접 25%이상 지분관계 또는 이전가격 영향 줄 수 있는 관계사로 규정)</p>
<p>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p>	<p>-과세원칙이 속지주의세금체제(territorial tax system)로 전환되면서 해외 자회사로부터</p>

해외 자회사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최고 35% 세율로 부과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100% 면세 -과거 축적된 해외 자회사 누적이익잉여금을 일시 미국배당으로 간주해 현금성 자산에 15.5%, 그 외 자산에 8%를 과세. -8년 분할 납부 가능
국외소득에 대한 과세 국내소득과 동일하게 최고 35%의 세율로 과세	-미국납세자의 지적 재산권 사용으로부터의 국외 수입에 낮은세율 13.125% 적용. -저세율국가에 소재한 해외투자기업을 통한 지적재산권 소득에 대해 10.5% 과세

법인세 개편에 따른 영향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미국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돼 2018년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이 4만달러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 20%의 최저한세도 폐지돼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율인하로 인해 조세피난처를 찾아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국내로 회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개편에 따른 영향

국제조세를 개편함에 따라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감소하고 미 기업은 이익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 전, 미국의 다국적기업은 높은 법인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투자를 활성화했으며, 이는 일자리를 비롯한 국부유출을 초래했습니다. 과세제도가 속인주의에서 속지주의로 변화하면서 해외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관계사의 무형자산 소득의 50%를 미국 모기업의 이익에 추가하였으며 해외 관계사의 지적재산권 관련 이익의 실효세율 10.5%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37.5% 공제가 적용되며 부과되는 실효세율은 13.125%대로 낮아집니다. 해외 무형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부여한 반면 새롭게 부과된 해외관계사의 무형자산 소득과세는 조세회피에 따른 이득을 축소시킵니다. 또한 미국 글로벌 기업들의 해외 수익금 송환세를 대폭 낮추면서(35%→14.5%),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 놓은 수익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다국적 기업이 절세를 위해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세원잠식방지세(BEAT·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의 도입에 따라 해외 관계사거래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감소하고 미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patriation Guidance 'Top of Our List' After Tax Reform: IR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17 pg, 6\)](#)

미국: 세제개편안 이후 본국송환세 가이드라인 발표의 필요성

현재의 개정법안이 미 상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법화될 시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원천소득을 본국으로 송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이러한 원천소득이 중복되어 과세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개정 논의 중인 Section 965 의 조항들의 경우, 해외원천소득을 간주송환으로 볼 뿐만 아니라 세율 또한 다소 높아 대다수의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 취지의 배경은 대부분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하여 높은 3 단계 공제형식(70%, 80%, 100%)을 띠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 최대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한편, 간주송환이란 모든 국외원천소득이 미국으로 송금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2004 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법에 따라 Section 965 를 통해 해외계열사 수익을 미국 내에서 재투자시 본국 송금된 배당수익에 대해서 연방세율 35%가 아닌 5.2%로 과세하였습니다. 현재, 간주송환에 따라 개정된 세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4.5%, 기타수익에 대해서는 8%를 적용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율을 적용 받는 유보이익은 1986 년 이후를 기점으로 약 3 조 달러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IRS 관계자들은 일련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개정 Section 965 의 경우 논의의 현 중심에 있습니다.

세부사항

12월 7일 Practicing Law Institute측이 주최한 Los Angeles 회의에서 McCall (IRS 부수석 심의관)은 간주송환에 대한 규정은 현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기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Section 965의 전반적인 기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IRS가 “특이사항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현재 “무조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사안은 잠재되어 있는 중복과세 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중복 과세 문제가 발효된 최종법안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는다면, IRS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 알아봐야 할 것이며, IRS는 이를 위해 학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의견 수용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른 유의사항 발표

2004년 IRS는 Section 965와 관련하여 세 개의 유의사항을 발표하였고, 각각의 유의사항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앞서 언급한, 일시적으로 낮은 세율 하에 해외자회사들의 배당수익을 송금 받는 미국 회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유사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이 선택적 규정이었다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속지주의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추세에 따른 경과규정 및 명백한 의무 규정의 성격이 강합니다.

당시에는 시급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유의사항 형태로 밖에 발표할 수 없었습니다. 새롭게 발행되는 가이드라인 역시 유의사항 형태로 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ailand: Update on transfer pricing proposals

태국: 이전가격세제 권고사항 업데이트

태국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 입법 수정 초안을 주제로 한 공개 협의 과정 중 제기되었던 질의사항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과세당국의 견해입니다.

특수관계기업 혹은 법률상 특수관계 파트너십 (Related Juristic Partnership)

이전가격세제 수정 초안에서 다루는 지분율은 두 기업이 특수관계기업 혹은 법률상 특수관계 파트너십인지의 여부를 가릴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 특수관계기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태국 과세당국은 간접 지분이 실제 혹은 실질 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전가격조정

태국 국세청은 이전가격세제 수정초안에서 이차적인 이전가격조정 역시 규제할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Section 71 초안에 의거하여, 납세자의 접근 가능한 소득 및 허용 가능한 공제의 이전가격조정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또한, 수정된 본 조항의 소득 및 공제 규정의 경우 관계기업들 간 자동적인 이전가격조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과세당국 간 발생하는 독립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조세환급

이전가격세제 수정 초안은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조세 환급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신고납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조세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가격세제 초안에 따르면 기존의 조세환급 기한이 지나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조정 통보를 받으면, 납세자는 통지일로부터 60 일 내에 조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가격 공시 형식

이전가격 공시 형식에는 태국 정부가 납세자로부터 쉽게 입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특수관계자간거래의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전가격 공시 형식의 작성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작성 부담을 주려는 의도는 없으며 이전가격 공시 형식에 담겨있는 정보는 태국 정부에게 특수관계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및 이전가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공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문서화 작성 기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며 사업연도에 따른 문서 준비 및 제출 기간도 규정에 의해 확정될 것입니다.

이전가격문서화

통상적으로 이전가격문서화는 독립기업간 거래 기준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정책이 정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수관계거래가 발생하기 전 혹은 그 시점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통지일로부터 60 일 내에 이전가격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은 납세자가 문서 및 증거들을 규정된 이전가격문서형식으로 취합할 수 있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고 여깁니다.

추후, 이전가격문서화의 준비 및 관련 증거들과 관련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것입니다.

벌금 제도

특수관계거래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전가격과 관련된 정보 및 문서가 부정확 혹은 불완전 할 시 납세자에게 최대 200,000 Baht (약 65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의 금액은 조세사건별로 책정되며, 위법행위 및 정황의 본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1 년입니다.

태국 국세청은 이전가격조정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물론, 납세자가 필수 정보/문서를 과세당국 요청에 따라 준비 및 제출한다는 가정하의 경우입니다.

KPMG 의견

현 시점에, 태국 국세청은 공개 협의에서 도출된 이전가격세제 초안을 태국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의회가 초안을 승인하고, 결과적으로 법률이 최종 시행되면, 태국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혹은 해외에 진출한 태국기업들은 그들의 이전가격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이전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최종적인 독립기업간 정상가격 방법, 혹은 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 그리고 이전가격 공시 및 문서화와 관련한 필수 준수 규정들의 도입을 확인 및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실질 및 가치창출이 현 주된 관심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문서화 의무 필수규정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현 구체화된 이전가격규정, 강화된 문서화 요건, 복잡한 감사관행 및 불이행에 따른 중벌과금에 대응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한편, 선제적으로 이전가격정책 및 문서를 완벽히 분석하여 준비하는 것은 추후 이전가격조정 및 벌금의 감소와 관련한 과세당국과의 협상 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